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5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개 인	㈜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○○○

2. 조치내용

□ 개인에 대한 조치

◦ 해임권고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개 인

1.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

◦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

- ㈜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(대표이사 ○○○)은 2018.1.2.~2021.9.30.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○○○ 등 875명에게 KDB생명보험㈜의 ‘더알찬 유니버셜종신보험’ 등 16,748건의

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2,700.5백만원) 모집과 관련하여 총 4,429.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

- 이는 舊「보험업법」 제99조 제2항 및 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」 제25조 제1항 위반*에 해당

*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(제3자)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

나. 근거법규

□ 개인에 대한 조치

○ 舊「보험업법」 제99조 제2항
○ 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」 제25조 제1항 제2호
○ 「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」 제52조 제3항 제2호